

공정거래규범

삼호개발주식회사

제정일 2022.07.22.

전문

삼호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정도경영’이라는 기업이념 하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글로벌 기업시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앞장선다. 이에 공정거래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은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경쟁사와 정정당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고객]

- ①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에 합당한 품질과 목적물을 제공한다.
- ② 우리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한다.
- ③ 우리는 고객과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④ 우리는 고객에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⑤ 우리는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무단으로 이용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2조 [협력사]

- ① 우리는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협력사와의 상생을 추구한다.
- ② 우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③ 우리는 부당한 요구 또는 거래조건을 협력사에 강요하지 않는다.
- ④ 우리는 협력사의 희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⑤ 우리는 협력사의 정보,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3조 [경쟁사]

- ① 우리는 경쟁사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 ② 우리는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이용·유출하지 않는다.
- ④ 우리는 경쟁사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
- ⑤ 우리는 건전한 거래관행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